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65호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6 7 5 호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2

고 시

○ 고 시 제 4 3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 고시 미 래 전 략 과 84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 - 675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미래전략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	환경보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기획예산과

2025. 3. 28.

남 동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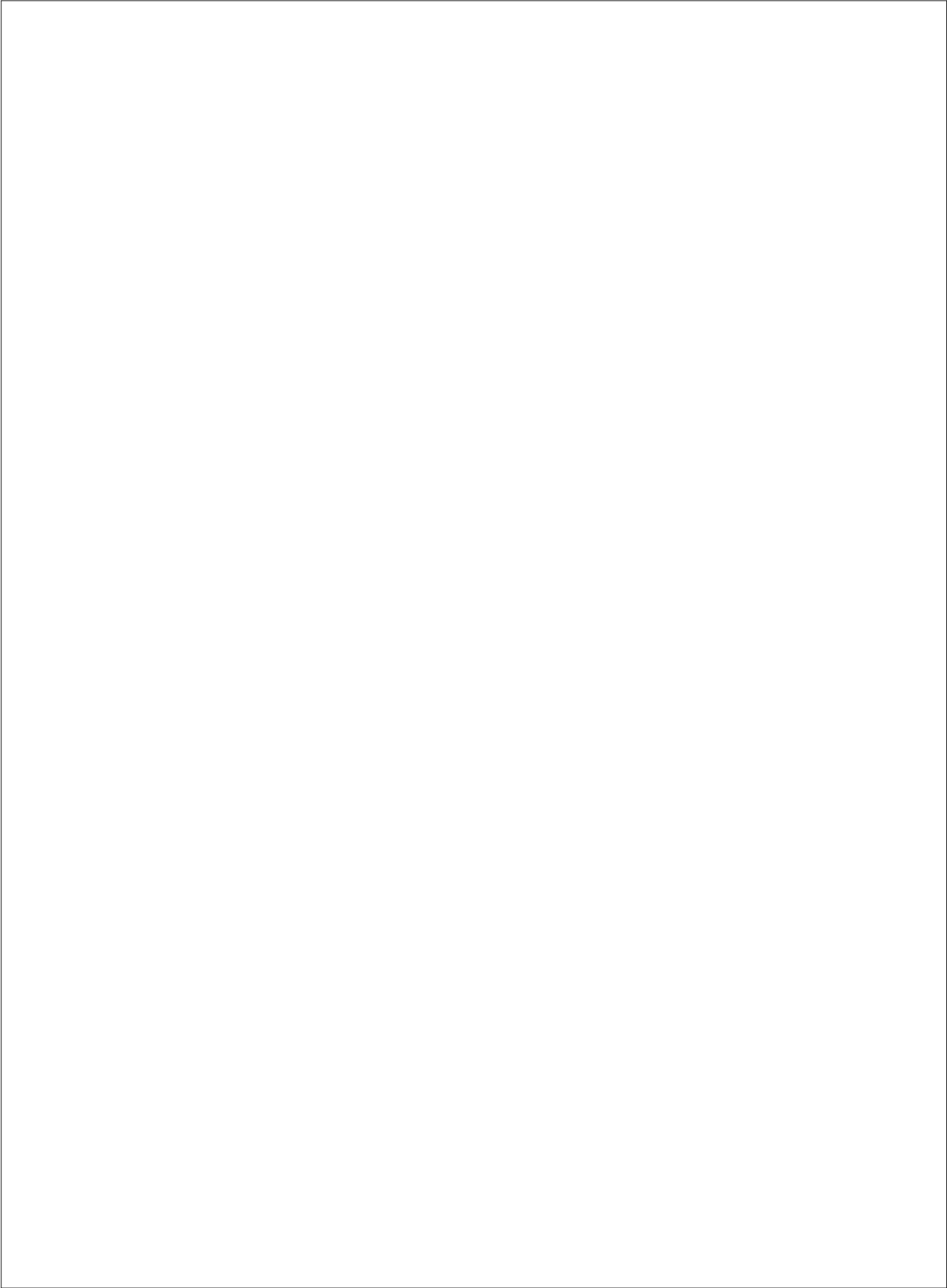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5. 4. 10.(목) ~ 4. 24.(목)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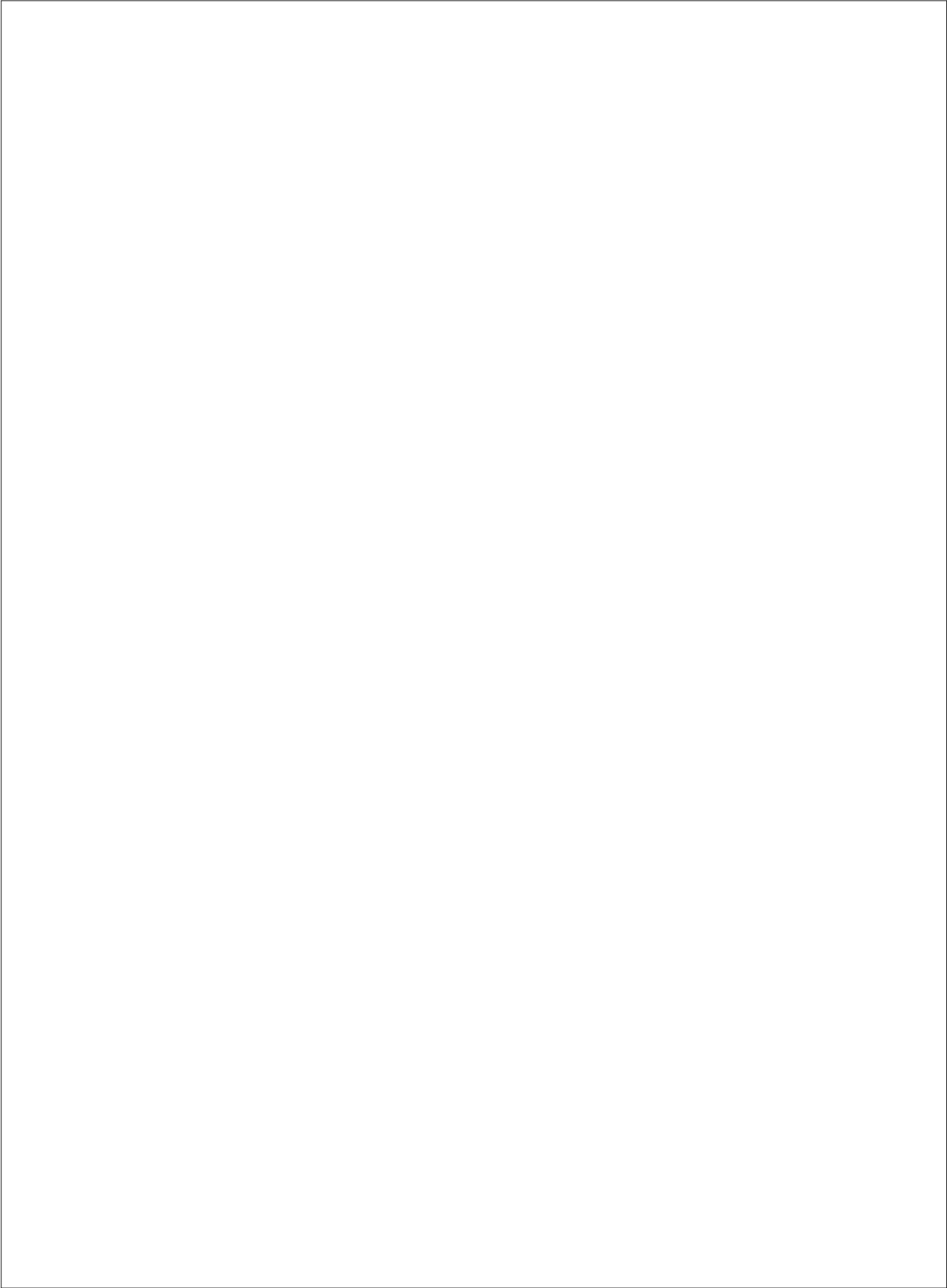
-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미래전략과)
-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재무과)
-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평생교육과)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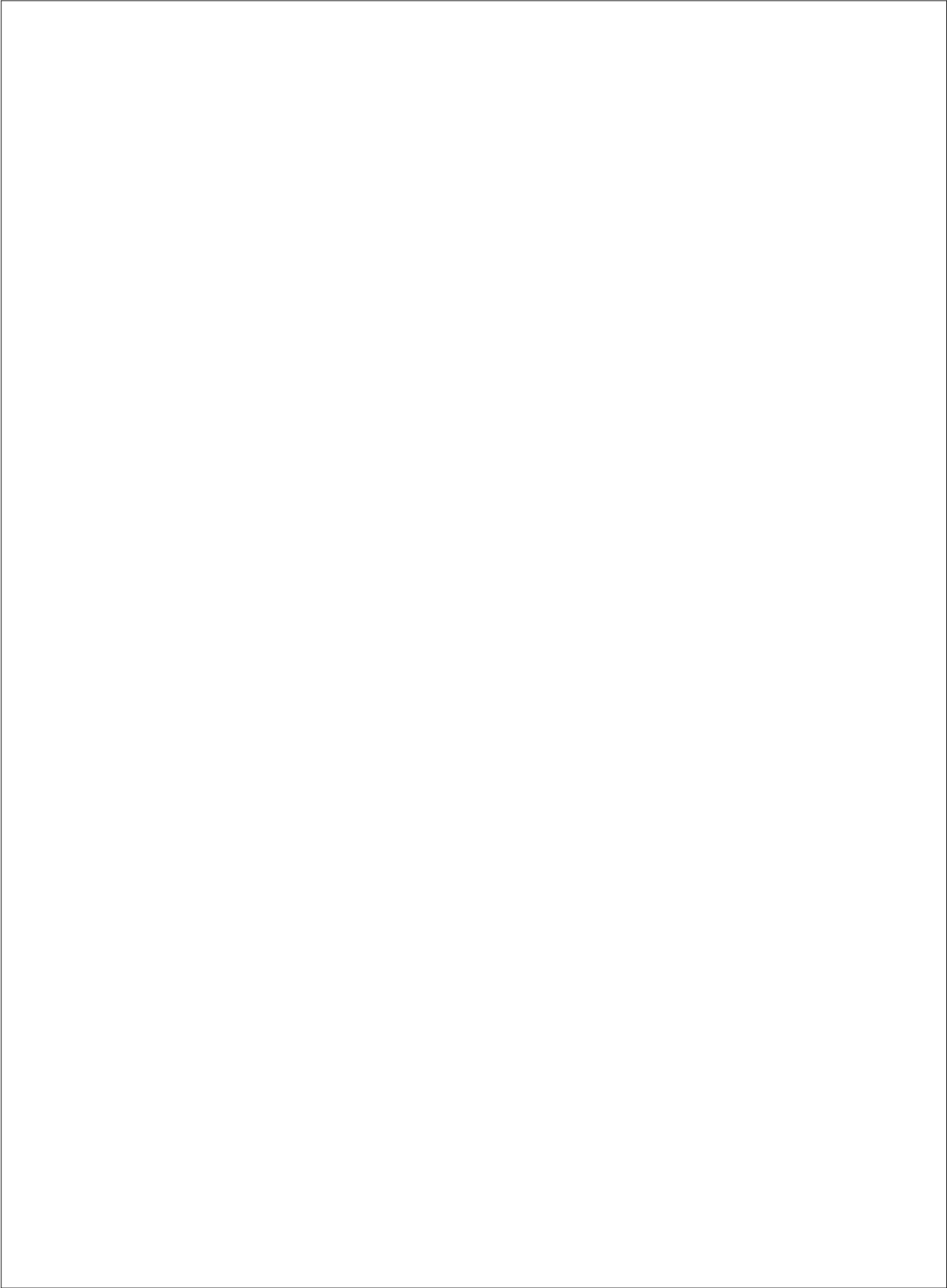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1
(보육정책과)

-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 75
(환경보전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64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 야외 물놀이장 구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입장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제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입장료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참고사항

- 「관광진흥법」 제3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 논현동 644-1번지 일원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 및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장료) 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입장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남동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남동구민: 100분의 50 감면
3.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제7조(입장료 반환) 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환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제4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7. 물놀이장의 안전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준수한다.
8.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별표 2]

물놀이장 이용수칙(제4조 관련)

1. 6세 이하의 영아·유아 또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물놀이 시설 이용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이용 바랍니다.
4. 물놀이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5. 물놀이 시설 주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6.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별표 3]

입장료(제5조 관련)

(단위: 원)

대상 구분	영아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고
입장료	무료	5,000			
연령기준	36개월 미만	-			

[별표 4]

입장료 감면 대상(제6조 관련)

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다자녀가정’
2.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5. 국가보훈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6. 기타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비고
 - 가.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논현유수지 야외물놀이장 구성에 따른 위탁운영비 발생

나. 관련조문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개월 운영을 기준으로 운영인력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매년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비용 산출
- 유료운영(5,000원, 남동구민 50% 할인)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운영수입 산출

나. 추계 결과

(1) 세출

- 개장 첫해 인건비 135,086천원과 재료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 및 초기 구축 비용 61,319천원이 발생하여 총 196,40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 2년차는 초기 구축 비용이 제외되어 감소하나 매년 인건비 상승(3%) 등에 의해 개장 3년차 부터 연간 약 4,000천원의 예산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5년간 984,97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2) 세입

- 2개월 운영 시 32,400명(평일:500명,38일/ 주말: 800명,18일)이 방문 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입장료 수입 81,000천원(32,400명*2,500원)과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수입 20,000천원 등 연 101,000천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다. 재원조달 방안: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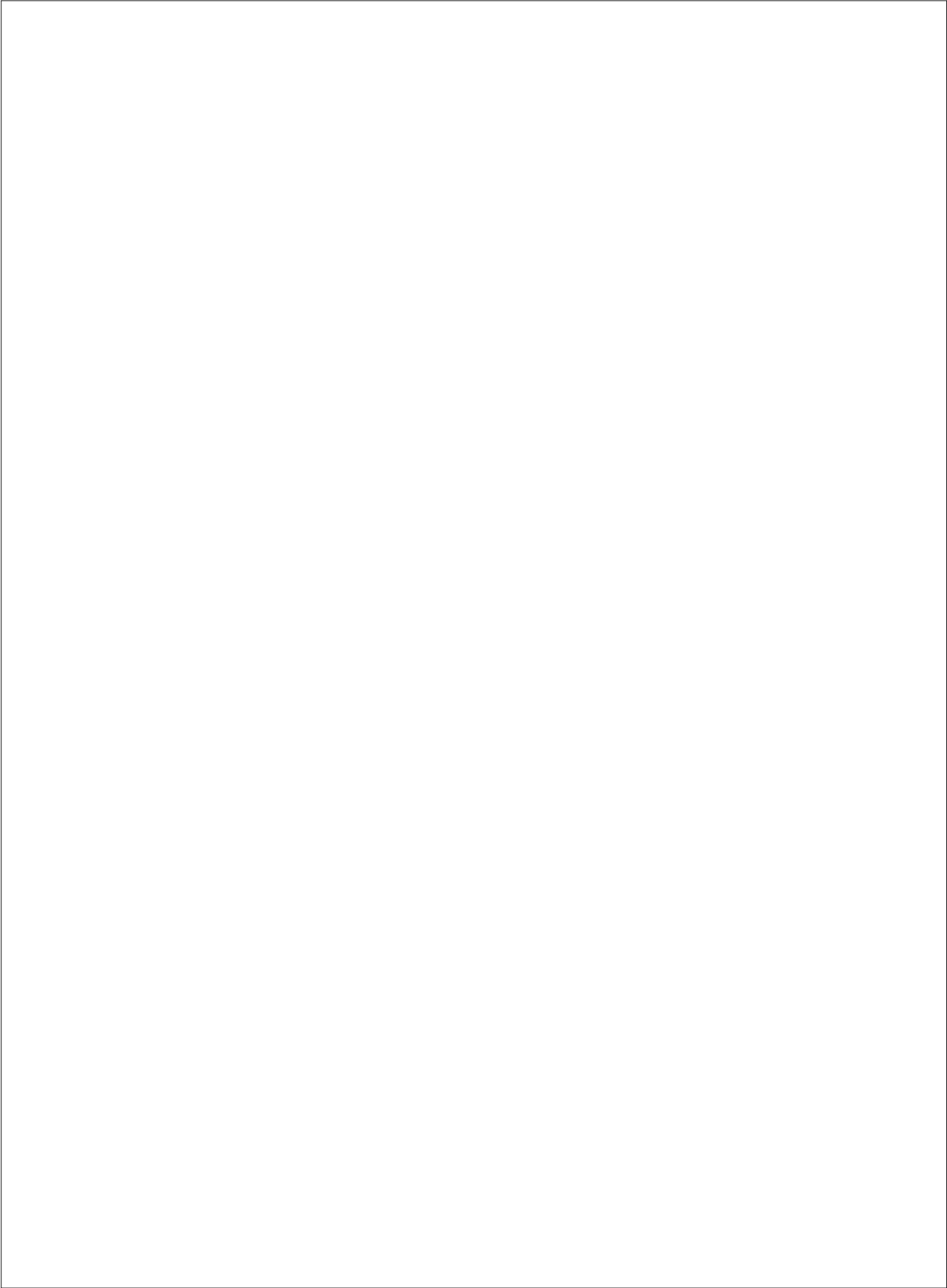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세 출		196,405	190,757	194,930	199,229	203,657	984,97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지방세						
	세외수입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지 방 채		-					
기 금		-					
공기업 특별회계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참고자료]

□ 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

의안 번호	3065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만수동 895-4번지에 위치한 진주4호 공영주차장 주변은 주차 환경이 열악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월정기권 신청이 수량 대비 약 2배 이상 신청되는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 주민을 대상으로 증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80퍼센트의 찬성률이 나옴에 따라 입체식 1층 2단으로 증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증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
 - 위 치 : 만수동 895-4번지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 1,992,000천원
 - 사업규모 : 주차면수 26면 증설(총 69면), 지평식 → 입체식 1층 2단

☐ 추진계획

- 2025. 2월 ~ 5월 : 실시설계 용역
- 2025. 5월 : 공사 착공
- 2025. 11월 : 공사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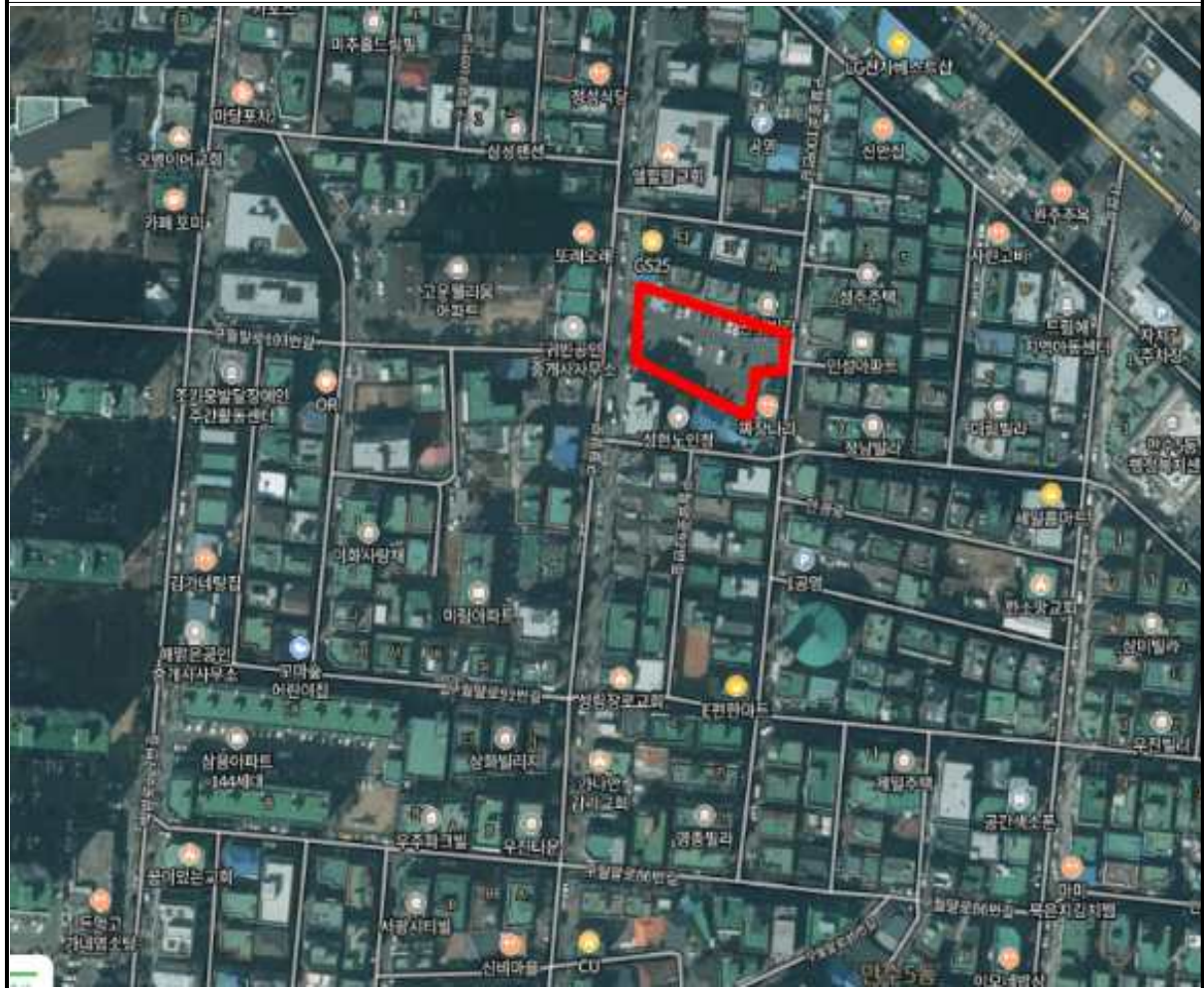
공유재산(증설) 관리조서

□ 사업명 :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

[부서명 : 교통행정과]

위	치	만수동 895-4번지					
토	지	지	목	면적(m²)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대장가격(천원)
		주차장		1,528.3	남동구	2018. 7. 16.	1,653,620
공	작	물	연	면	적	-	
			구	조	-		
토지매입비		-					
총공사비		1,992,000천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위 치 도]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의안 번호	3065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1992년 건립되어 30년 이상 노후되고 협소한 구월3동 행정복지 센터를 행정 및 문화체육이 결합된 복합청사로 신축할 필요가 있어,
- 구월동 1455번지 개발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예술 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로부터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신축된 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 위 치 : 구월동 1098-7, 1098-8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 사 업 비 : 12,000,000천원(추정)
 - 사업규모 : 연면적 3,764.37㎡/ 지하1층 ~ 지상6층

□ 추진계획

- 2025. 3월 : 시행협약 체결
- 2025. 하반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6. ~ 2027. : 착공 및 준공

공유재산(기부채납)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동구 구월동 1098-7, 1098-8번지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1098-7	대	919.2	남동구	1992.1.29.	1,657,317
		1098-8	주차장	244.7	남동구	2011.10.4.	380,508
건	물	연 면 적		3,764.37㎡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토지매입비		-					
총 건 축 비		12,000,000천 원(추정)					
사 업 기 간		2025년 ~ 2027년					

[위 치 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m ²)	금 액	건수	수량(m ²)	금 액	건수	수량(m ²)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3,764.37 1,528.3	12,000,000 1,992,000	1 1	3,764.37 1,528.3	12,000,000 1,992,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3,764.37 1,528.3	12,000,000 1,992,000	1 1	3,764.37 1,528.3	12,000,000 1,992,000	기부채납 공작물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m ²)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m ²)						
1	주차장	만수동 895-4	1,528.3	1,528.3	1,992,000	2025.12.	증설 (주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교통행정과)	공작물 설치 (입체식 주차시설)
2	대	구월동 1098-7	919.2	3,764.37	12,000,000	2027년	기부채납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도시재생과)	건물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부채납)
	주차장	구월동 1098-8	244.7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매각대상 재산목록 서식”을 참조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66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관련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전)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후)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규정 : 안 제4조~제6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7조, 제8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9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 : 안 제10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11조
- 준용 규정 : 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 「축산법」 제3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 「교육기본법」 제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동구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

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물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

4.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 중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시설의 총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우수 식재료 사용 시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천광역시 및 교육감·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남동구 의회 의원
 - 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사
 - 라. 인천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마. 친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바. 학교급식 또는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사. 그 밖에 학교급식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구체적 지원 기준에 의한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3.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동구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안전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참고자료]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

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

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호 중략)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하 생략)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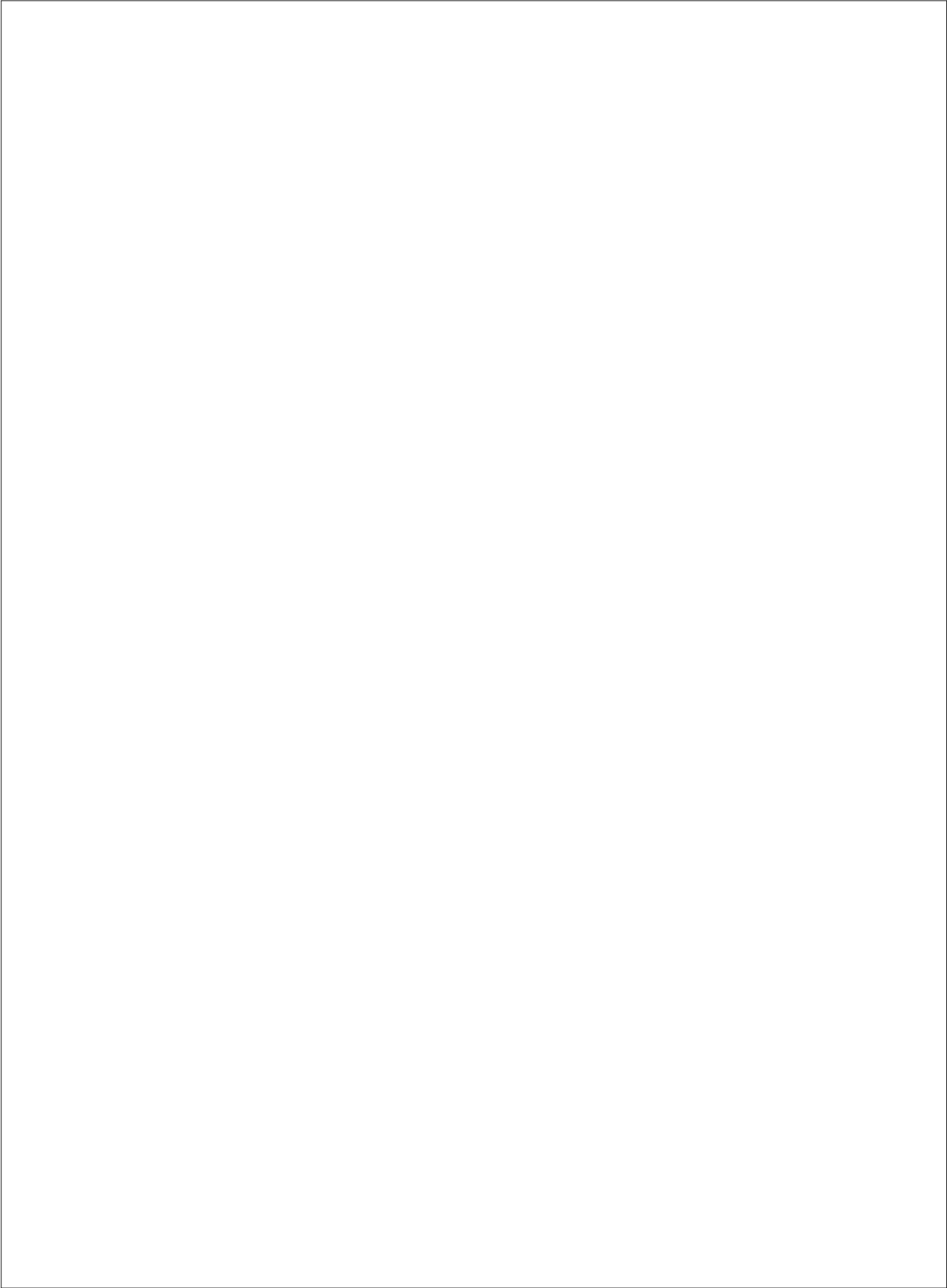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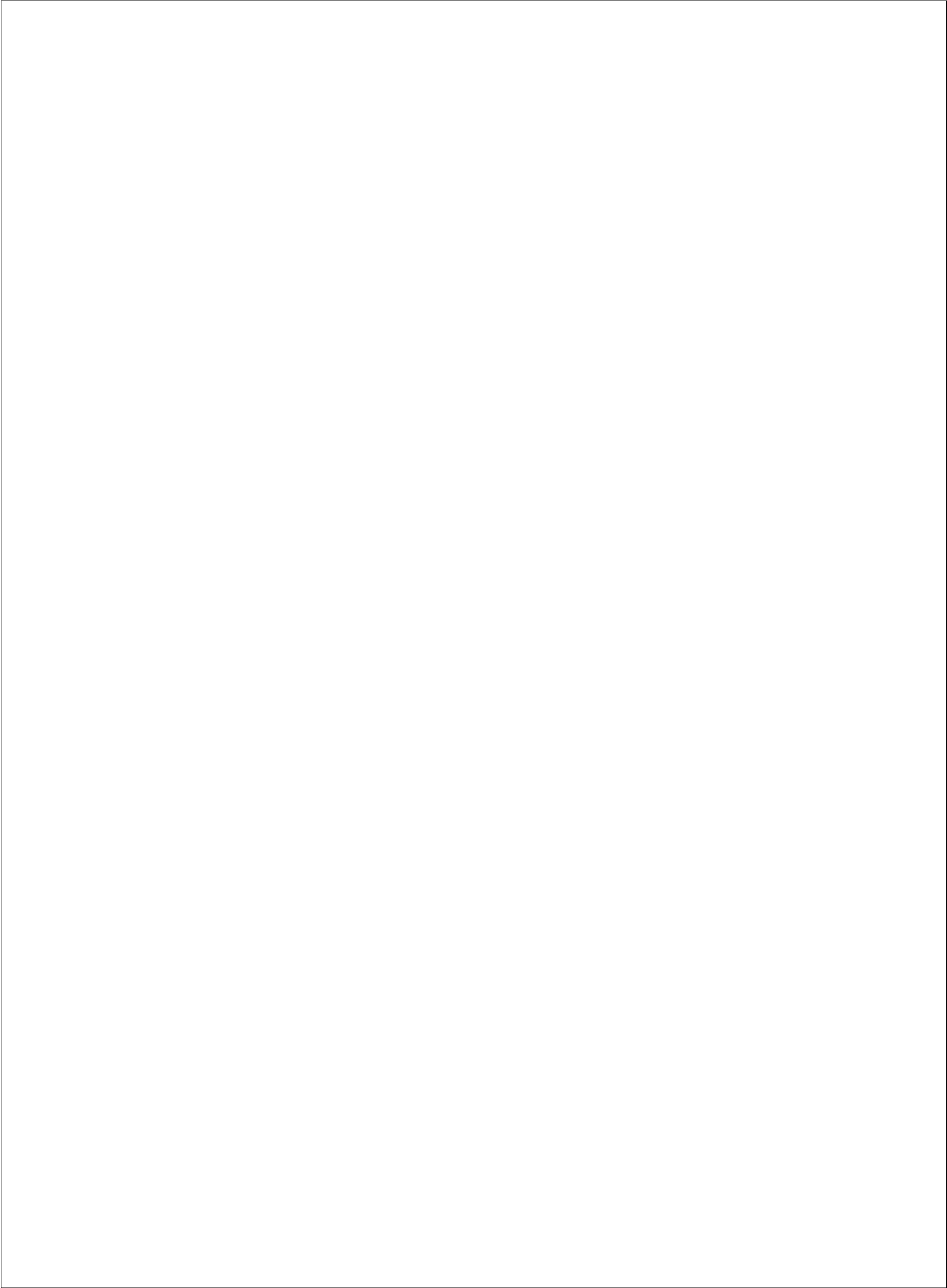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67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5년 하반기 위탁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2개소)
- 위탁시설

(2025. 3. 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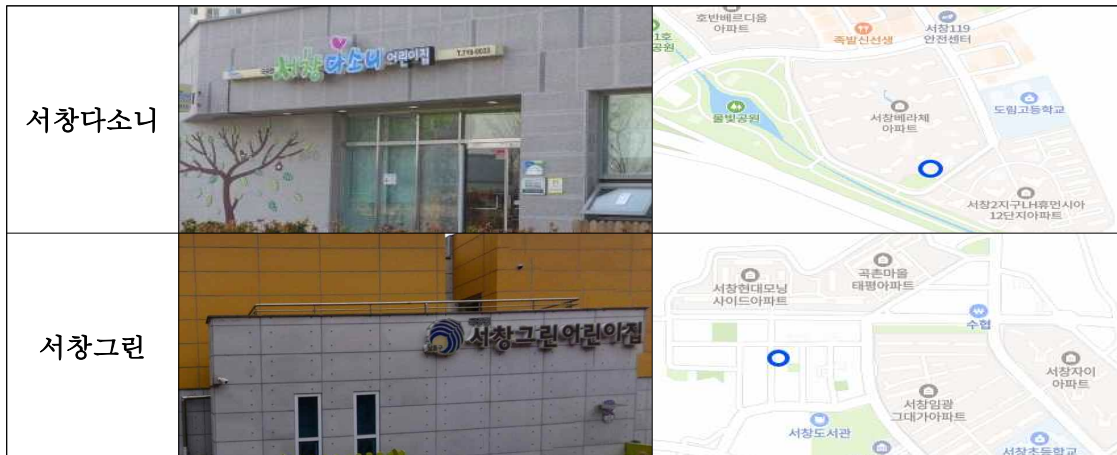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현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예정)
서창다소니	서창남로 17 (서창2동, 서창LH11단지)	279.295㎡	45명 (24명)	2013.04.12.	2025.07.17. ~ 2030.07.16.
서창그린	매소홀로1104번길 17 (장수서창동)	498.55㎡	60명 (29명)	2015.09.01.	2025.09.01. ~ 2030.08.31.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4,218,052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2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5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5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5년 ~ 2029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5년)
- 발생비용 : 4,218,052천원 (국52, 시35, 구13)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3,675,307천원, 구비 542,745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 미 경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697,231	715,588	734,494	753,968	774,026	3,675,307
국시비보조금			697,231	715,588	734,494	753,968	774,026	3,675,307
세 출			801,761	822,068	842,983	864,526	886,714	4,218,05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801,761	822,068	842,983	864,526	886,714	4,218,05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697,231	715,588	734,494	753,968	774,026	3,675,307
	보 조 금	국비	415,630	427,320	439,359	451,760	464,533	2,198,602
		시비	281,601	288,268	295,135	302,208	309,493	1,476,705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4,530	106,480	108,489	110,558	112,688	542,745
	구 비		104,530	106,480	108,489	110,558	112,688	542,745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현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위별 평균 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공보육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요 지

구청장 결재 |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2개소)

(2025. 3. 6. 기준)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서창다소니	서창남로 17 (서창2동, 서창LH 11단지)	279.295㎡	45명 (24명)	2013.04.12.
서창그린	매소홀로 1104번길 17 (장수서창동)	498.55㎡	60명 (29명)	2015.09.01.

- 위탁(예정)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 '25. 4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5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6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6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2025년 하반기 위탁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 2개소

(2025. 3. 6. 기준)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서창다소니	서창남로 17 (서창2동, 서창LH 11단지)	279.295㎡	45명	24명	정은수 (2회)	2020.07.17.~ 2025.07.16.
서창그린	매소홀로1104번길 17 (장수서창동)	498.55㎡	60명	29명	김란옥 (2회)	2020.09.01.~ 2025.08.31.

- 위탁(예정)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서창다소니 : '25. 07. 17. ~ '30. 07. 16.
 - 서 창 그 린 : '25. 09. 01. ~ '30. 08. 31.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5. 5월 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5월 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 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제 선정 심사

1. 위탁제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교육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제·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제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제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제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함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 '25. 4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5. 5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5. 6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5. 6월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5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서창다소니	서창남로 17 (서창2동, 서창LH11단지)	279.295㎡	45명 (24명)	2013.04.12.
서창그린	매소홀로1104번길 17 (장수서창동)	498.55㎡	60명 (29명)	2015.09.01.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서창다소니 : '25. 07. 17. ~ '30. 07. 16.

○ 서창그린 : '25. 09. 01. ~ '30. 08. 31.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5. 04. 25.(금) ~ 2025. 05. 16.(금)

○ 접수기간 : 2025. 05. 09.(금) ~ 2025. 05. 16.(금)

○ 접수장소 : 평생학습관 2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 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제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제·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제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제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교육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제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제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 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제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제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공고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함
 -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 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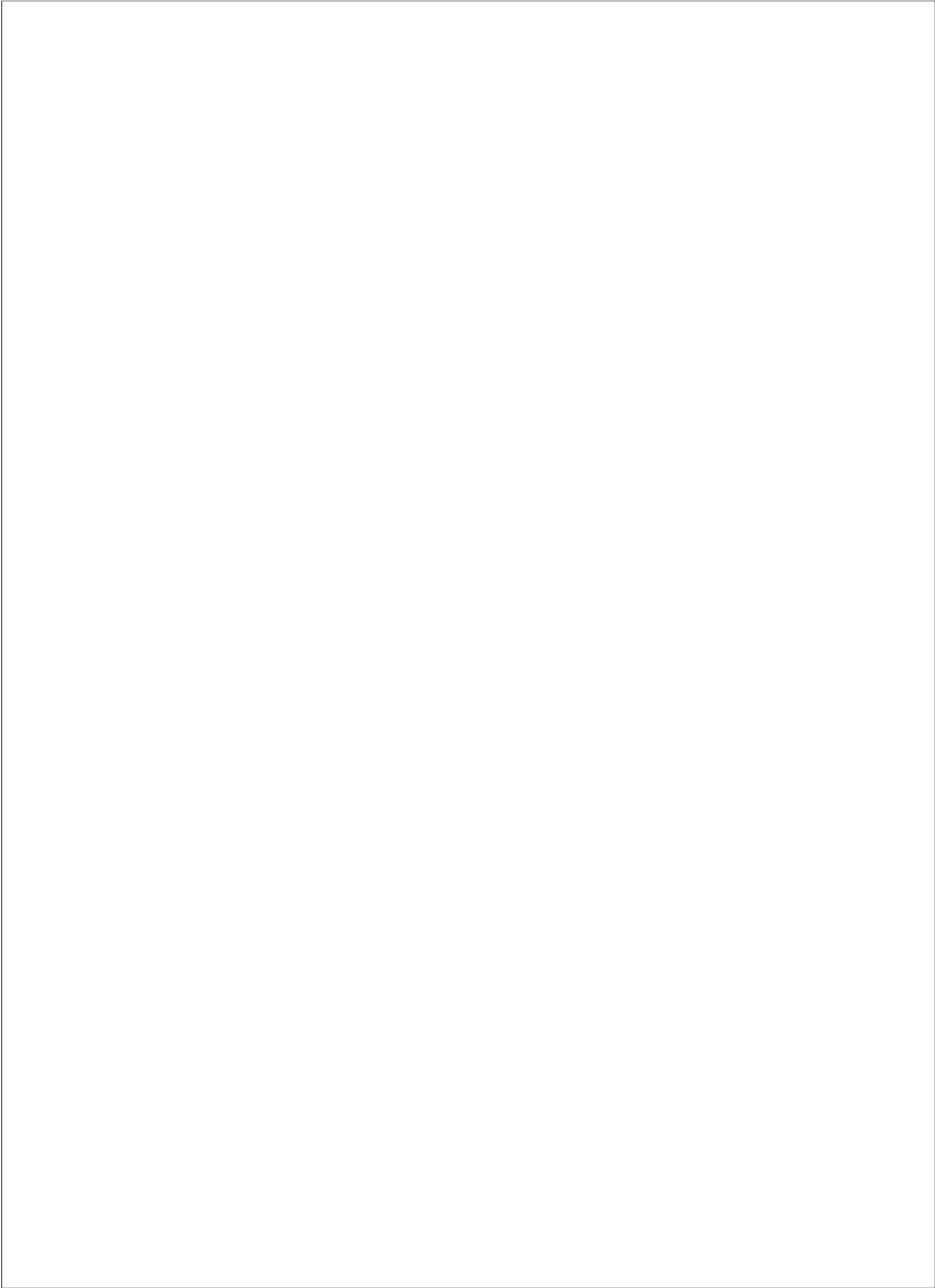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

의안 번호	3068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보고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현황 분석(환경요인,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배출·흡수 전망
-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 기본계획 추진과제
- 이행관리 및 환류

☐ 보고자료

-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요약)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요약]

□ 추진근거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조

□ 계획범위

- (공간적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역
- (시간적범위) 2025 ~ 2034년(10년간)

□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천tCO₂eq)

부문		2016	2017	2018 (기준연도)	2019	2020
합계*		2,740.8	2,824.2	2,866.1	2,808.3	2,685.7
건 물	건물	1,343.9	1,406.5	1,428.5	1,355.2	1,252.6
	가정	724.6	760.2	762.5	738.3	714.5
	상업/공공	619.3	646.3	665.9	616.9	538.1
	수송	1,164.0	1,172.3	1,219.5	1,260.5	1,258.4
농축산		1.53	1.57	1.27	0.82	0.90
폐기물		231.3	243.8	216.8	191.7	173.8
흡수원		-27.6	-19.1	-16.6	-13.4	-13.6

자료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18년 대비 2030년 40.1%, 2034년 51.7% 감축

(단위: 천tCO₂eq)

구분			부문	2018년 기준 배출량	2030년				2034년			
					배출 전망	목표 감축량	목표 배출량	감축율 (%)	배출 전망	목표 감축량	목표 배출량	감축율 (%)
합계				2,866.1	2,283.5	566.3	1,717.2	40.1%	2,154.4	769.7	1,384.7	51.7%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	가정	762.5	633.9	46.9	587.0	23.0%	607.6	50.7	556.9	27.0%	
		상업·공공	665.9	415.5	0.8	414.7	37.7%	364.5	0.8	363.7	45.4%	
	수송		1,219.5	1,167.4	512.0	655.4	46.3%	1,137.5	708.9	428.6	64.9%	
	농축산		1.27	0.8	0.0002	0.8	38.5%	0.8	0.0002	0.8	37.0%	
	폐기물		216.8	79.2	6.3	72.9	66.4%	57.2	8.8	48.4	77.7%	
흡수 및 제거			흡수원	-16.6	-13.3	0.3	-13.6	18.1%	-13.2	0.4	-13.6	18.1%

* 2018년 기준 배출량 합계는 흡수원을 제외한 값임(환경부 가이드라인)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 관련근거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조

2 계획범위

- (공간적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역
- (시간적범위) 2025 ~ 2034년 (10년간)

3 추진경과

- 2023. 2. :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 2023. 12.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착수
- 2024. 6. : 남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중간보고
- 2024. 9.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ACT센터) 컨설팅 및
업무관련 부서별 담당자 회의 실시
- 2024. 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24. 11. :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2025. 3. : 남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4

남동구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천tCO₂eq)

부문		2016	2017	2018 (기준연도)	2019	2020
합계*		2,740.8	2,824.2	2,866.1	2,808.3	2,685.7
건 물	건물	1,343.9	1,406.5	1,428.5	1,355.2	1,252.6
	가정	724.6	760.2	762.5	738.3	714.5
	상업/공공	619.3	646.3	665.9	616.9	538.1
수송		1,164.0	1,172.3	1,219.5	1,260.5	1,258.4
농축산		1.53	1.57	1.27	0.82	0.90
폐기물		231.3	243.8	216.8	191.7	173.8
흡수원		-27.6	-19.1	-16.6	-13.4	-13.6

*흡수원을 제외한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기재

자료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5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

비전

구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도시 탄소중립 남동

목표

2018년 대비 2030년 40.1% 감축

2050 탄소중립(Net Zero) 실현

건물

- 기존 건물 ZEB 전환
- 건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폐기물의 에너지 생산

수송

-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 교통수요 관리

농축산

- 탄소중립형 농업환경 조성

폐기물

- 폐기를 원천 감량
- 폐기를 재활용 확대

흡수원

- 숲 조성을 통한 흡수원 확대

기후위기 적응대책

- 구민의 건강관리시스템 강화
- 클린하천관리
- 기후피해 경감시설 확충
- 산림재해 경감 및 구민이용 활성화증진
- 구민의 기후적응 역량 제고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풍수해 대응방안
- 산불 및 산사태 대응방안

지자체 간 협력

-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 유관기관 참여 기후변화 포럼 개최

교육 및 소통

- 구민 생활공간에서 기후 위기와 기후정책 교육 강화
- 자치구와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실천사업 강화
- 남동구 현행 교육사업

녹색성장 촉진

- 녹색금융지원
- ESG 경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녹색제품 구매지원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 도시공간 구조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

정의로운 전환

- 지역맞춤형 정의로운 전환 추진체계 구축
- 산업기업에 정의로운 전환지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인력양성

- 저탄소 미래산업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기업 인력양성 사업 강화

6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18년 대비 2030년 40.1%, 2034년 51.7% 감축

(단위: 천tCO₂eq)

구분			부문	2018년 기준 배출량	2030년				2034년			
					배출 전망	목표 감축량	목표 배출량	감축율 (%)	배출 전망	목표 감축량	목표 배출량	감축율 (%)
합계				2,866.1	2,283.5	566.3	1,717.2	40.1%	2,154.4	769.7	1,384.7	51.7%
온실가스 배출량	건 물	가정	762.5	633.9	46.9	587.0	23.0%	607.6	50.7	556.9	27.0%	
		상업·공공	665.9	415.5	0.8	414.7	37.7%	364.5	0.8	363.7	45.4%	
	수송		1,219.5	1,167.4	512.0	655.4	46.3%	1,137.5	708.9	428.6	64.9%	
	농축산		1.27	0.8	0.0002	0.8	38.5%	0.8	0.0002	0.8	37.0%	
	폐기물		216.8	79.2	6.3	72.9	66.4%	57.2	8.8	48.4	77.7%	
흡수 및 제거			흡수원	-16.6	-13.3	0.3	-13.6	18.1%	-13.2	0.4	-13.6	18.1%

* 2018년 기준 배출량 합계는 흡수원을 제외한 값임(환경부 가이드라인)

○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

(단위: 천tCO₂eq)

부문 (과제수)	세부사업		담당부서	온실가스 감축량 (2030년 기준)
건물 (7개)	1.1.1 기존건물 ZEB 전환			
	1.1.1.1	친환경 고효율(LED) 도로조명 정비사업	도로과	823.1
	1.1.1.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	환경보전과	8,841.90
	1.1.1.3	도시가스 보급 확대	생활경제과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과)	6,658.90
	1.1.1.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생활경제과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과)	498
	1.1.2 인센티브 및 규제를 통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1.1.2.1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너지분야)	환경보전과	74.9
	1.1.3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1.1.3.1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추진 사업	생활경제과	3,389.70
	1.1.4 폐기물의 에너지 생산			
	1.1.4.1	폐기물 소각열역 지역난방 공급	인천환경공단 위드인천에너지	27,457.50

부문 (과제수)	세부사업		담당부서	온실가스 감축량 (2030년 기준)
수송 (7개)	1.2.1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1.2.1.1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인프라 설치	생활경제과	정성사업
	1.2.1.2	친환경차 보급	생활경제과	360,653.50
	1.2.1.3	노후차 저공해조치 사업	환경보전과	8,823.00
	1.2.2 교통수요 관리			
	1.2.2.1	승용차 선택요일제 활성화	교통행정과	14
	1.2.2.2	자전거 도로 및 시설 정비사업	도로과	7.1
	1.2.2.3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자동차분야)	환경보전과	14.8
	1.2.2.4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142,455.00
농축산 (1개)	1.3.1.1	친환경농업 지원	농축수산과	0.2
폐기물 (6개)	1.4.1 폐기물 원천 감량			
	1.3.1.1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 추진	청소행정과	1,593.00
	1.3.1.2	지방세 전자고지서 발행	세무1과	0.8
	1.3.2 폐기물 재활용 확대			
	1.3.2.1	폐자원 재활용 사업	청소행정과	258.2
	1.3.2.2	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	청소행정과	1.9
	1.3.2.3	친환경 위생매립	청소행정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375
	1.3.2.4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하수과	4,066.10
탄소흡수 (3개)	1.4.1 숲 조성을 통한 흡수원 확대			
	1.4.1.1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치수과	설계중
	1.4.1.2	도시숲 조성	공원녹지과	291.2
	1.4.1.3	숲가꾸기	공원녹지과	0.05

7 이행관리 및 환류

○ 이행점검 체계

부문	총괄	부문별 소관부서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도로과 생활경제과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세무1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이행평가 운영 총괄(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 마련) - 이행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전담조직 운영
---------------	--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점검·평가 결과 심의 및 정책방향 제언	

○ 추진상황점검 세부이행절차

구 분	절 차	주요내용	주 체	일 정*
계획 단계	점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점검 일정, 대상, 방법 등 계획 수립	시·군·구 (주관부서)	9월
점검 및 평가	↓			
	추진실적 검토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점검표 작성	시·군·구 (소관부서)	10~12월
	↓			
	추진실적 정리	소관부서 실적 및 점검표 취합·정리	시·군·구 (주관부서)	12~차년도 1월
보고 및 환류	↓			
	결과보고서	실적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군·구 (주관부서)	1~2월
	↓			
	점검보고회	이해관계자 대상 점검 보고회 개최	시·군·구 (주관부서)	3월
	↓			
	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주관부서→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군·구 (주관부서)	3월
	↓			
	심의 및 의견반영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의견 차년도 점검계획 반영)	시·군·구 지방위원회	4월
	↓			
	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주관부서→환경부, 관할 시·도)	시·군·구 (주관부서)	5월 31일까지
	↓			
	종합보고서 제출	지자체 종합결과보고서 정리·제출 (환경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7월 31일까지
	↓			
	확인 및 개선의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녹위→시·군·구, 개선의견 차년도 점검계획 반영)	탄녹위	~8월
	↓			
	지방의회 보고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주관부서→지방의회)	시·군·구 (주관부서)	12월 31일까지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법정기한(음영)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5-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3. 28.

남 동 구 청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일

가. 허가번호 : 제2025-1호

나. 허가일 : 2025년 3월 28일

2. 점용·사용의 목적 : 소래습지생태공원 공유수면 내 해안데크를

이용한 우회통행로 설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30, 1-56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구 분		면적(㎡)	비고
영구시설물/ 우회통행로	공유수면	492.00㎡	목교, 데크
임시시설물/오탁 방지막	공사용가도	1067.24㎡	철판 12t
총 면 적		1,559.24㎡	허가일로부터 30년

5.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명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6.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미래전략과(☎032-453-8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